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 때: 2010년 10월 18일(월) 2시
- 곳: 한국건강연대 3층강당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공 청 회 진 행 순 서]

사회 : 배경내(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말씀

- 홍세화(한겨레 논설위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

■ 1부 주제발표와 토론

[발제]

- 주민발의안 시안 발표
윤지영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토론]

- 오동석 교수 (아주대 헌법학 교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
- 최훈민 학생 (서울 삼각산중학교 학생회장)
- 홍인기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 김혜정 학부모 (서울 삼성중학교 학부모회장)
- 이복균 교장 (신도림중학교)
- 김형태 의원 (서울시 교육의원)

■ 2부 종합토론

자료집 차례

공청회 진행순서	1
모시는 글	3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작성을 위한 100인 위원회’ 명단	4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시안	6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초안에 대한 의견 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5
서울학생인권조례 공청회 토론문 최 훈 민(삼각산중학교 학생회장)	29
서울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안에 대한 토론 홍 인 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32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을 환영하며 김 혜 정(삼성중학교 학부모회장)	40
단위학교 교장 입장에서 본 학생인권조례 이 복 균(신도림중 교장)	44
서울에도 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되어야 한다. 김 형 태(서울시 교육의원)	47
[부록 1]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안	50
[부록 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61

모시는 글

화창한 가을입니다. 학교에도 화창한 인권의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고, 서울과 광주, 전북, 강원 등 지에서도 학생인권 신장을 염원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7일 뜻을 올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바지런히 노를 저어 왔습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라는 믿음을 뜻에 새기고, ‘사람의 얼굴을 한 교육’, ‘자유와 민주주의가 넘실거리는 교육’,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행복해지는 교육’에 가닿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지혜와 열망을 모아 왔습니다.

우리는 학생인권의 구체적 경전으로 자리 잡을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주의 깊게 탐독하고, 교육주체들의 고통과 열망을 귀담아 듣는 한편, 그 동안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해온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의 지혜를 끌어 모아, 오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발표합니다. 오늘의 주민발의안은 공청회와 의견 조회를 거쳐 수렴된 고견들을 십분 반영하여 보완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보다 더 나은 조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 박수를 보내며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청의 작품’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철학과 비전이 시민들이 함께 꾸는 꿈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100인위원회’에 함께하시면서 고견을 나눠주신 분들, 오늘 공청회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 주민발의운동의 청구인 대표를 맡아주신 홍세화 선생님, 그리고 먼 곳에서나마 오늘 이 자리를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는 분들, 모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작성을 위한 100인 위원회’ 명단(총 125인)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조례안 작성팀이 마련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함께 검토해 주신 각계 전문가교육주체 명단입니다. 총 125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 학생·청소년 (22명)

고원우(송곡고) 공기(한소영,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여성주의팀활동가) 곽건호(용곡중) 구다훈(덕성여중) 김유진(대원외고) 김재석(오산고) 뚝코(김해솔, 이수나로) 류서희(중앙여고) 문일평(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희망지기) 박마리(창일중) 어쓰(김동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노동빈곤팀활동가) 유남규(건대부고) 이상현(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사무국장) 이주현 정재환(광신중학교) 장주성(서울방송고) 조만성(고척고) 조세현(명덕고) 조이(이주연, 이수나로) 차민기(송곡고) 한김종희(수명고) 홍지효(북서울중)

□ 교육 (32명)

강수정(진보교육연구소 운영위원/목정중) 권종현(우신중) 김경옥(대안교육연대운영위원장) 김민선(신구로초) 김영래(가곡초) 김영승(세화여중) 김용주(신월중) 김한민(우이초) 김현(국악고) 노년환(중앙고) 마운중(인현중) 박복선(성미산학교교장) 박수영(거원초) 손대출(이대병설미디어고) 신창복(광장중) 오석규(고덕중교장) 오원식(종암중) 유상준(면남초) 유성희(개웅중) 이규동(누원초) 이동욱(신성초) 이복균(신도림중교장) 이영탁(온곡중) 이주영(마포초교감/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상임이사) 이주형(남강고) 이치열(대안교육연대사무국장) 이현(진보교육연구소소장) 장우연(수색초) 진영효(상암중) 최화섭(명일중) 한영순(영희초) 황철훈(염광중)

□ 학부모 (11명)

김수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운영위원) 박미향(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관동대표) 박부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상담실장) 박현숙(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대표) 안미경(어린이책시민연대) 이기중(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이미자(구암중학교학부모) 이빈파(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대표) 장문선(어린이책시민연대) 장은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최정화(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지부장)

□ 인권 (17명)

광호(동성애자인권연대활동가) 김조광수(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고문, 청년필름 대표) 류문수(원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 활동가) 민선(인권운동사랑방활동가) 박래군(인권재단‘사람’상임이사)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활동가) 박재경(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명남(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영림중교사) 이묘랑(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 정상덕(원불교인권위원회사무총장) 정을(동성애자인권연대대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한날(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현종스님(불교인권위원회)위원 홍의표(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수송초 교사)

□ 시민사회 (17명)

권혜진(홍사단교육운동본부사무처장) 김선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사무처장) 김해원(작가) 김희정(교육공동체 '나다' 활동가) 류상태(종교자유정책연구원 운영위원/목사) 박경석(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박광서(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배성인(문화연대문화정책센터소장)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상임대표) 변중용(교육공동체 '나다'활동가) 안찬수(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사무처장) 유상필(종교자유정책연구원전문위원/목사) 유정은(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전지협협부설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장) 이향숙(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구로 누리지역아동센터시설장) 임완숙(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인드라마생명공동체상임대표) 최준영(문화연대사무처장) 홍세화(학벌없는사회공동대표/언론인)

□ 학계 (7명)

김상봉(학벌없는사회운영위원/전남대철학과교수) 박명기(서울교대교수) 심성보(홍사단교육운동본부상임대표/부산교대교수) 이윤미(홍대교육학과 교수) 진영중(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소장/경기도학생인권조례개발연구책임자) 최윤진(한국시민청소년학회 회장/중대청소년학과 교수) 한상희(한국입법학회회장/건국대헌법학교수)

□ 법조계(5명)

김인숙(군인권센터운영위원/변호사) 소라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윤지영(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임인섭(종교자유정책연구원자문변호사)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변호사)

□ 노동(8명)

김승태(전공노서울지역본부수석부분부장) 김윤례(공공노조학교비정규직서울분회사무장) 노명우(민주노총서울본부수석부분부장) 변성호(전교조서울지부지부장) 안효안(전공노서울지역본부본부장) 안희진(공공노조학교비정규직서울분회교선부장) 이민숙(전교조서울지부수석부지장) 이재용(민주노총서울본부본부장)

□ 정당(6명)

김종민(민주노동당서울시당위원장) 신언직(진보신당서울시당위원장) 전권희((민주노동당서울시당수석부위원장) 정호진(진보신당서울시당부위원장) 차영민((민주노동당서울시당사무처장) 최은희(진보신당서울시당부위원장)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 시대를 열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초안과 그 해설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 2010년 7월 7일 발족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는 주민발의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학생도 존엄한 권리의 주체이며,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 학생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준을 상세화시켰습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출발 자료로 삼았고 △경기도조례가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고 △경기도조례가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항목을 수정하는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100인위원회’의 검토 의견과 시민제안마당(2010.10.06)에서 개선된 현장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마련되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는 10월 18일 공청회를 거쳐 더 많은 교육주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발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청구인 모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주민발의안의 구성(총 5장, 50개조) □

장	장의 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조례의 목적, 개념 정의, 학생인권보장 일반 원칙, 교육관계자의 책무, 교육관계자의 교육환경개선 노력의무
제2장	학생의 인권	○총 10개의 절과 23개 하위 권리조항으로 구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1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제2절), 교육에 관한 권리(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제4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제5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제6절), 복지에 관한 권리(제7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제8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9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제10절)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학생인권의날(제29조), 인권교육과 홍보(제30조~제33조),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인권실천계획 수립(제34조~35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36조~37조), 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제38조), 시민활동 지원(제39조) 등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제40조~44조),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제45조 ~47조) 등
제5장	보칙	학교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제48조) 등
부칙		조례 시행일(제1조), 경과조치(제2조)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학생인권조례의 근거 법률을 명시함으로써 상위법의 근거가 없다,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대비
- ☞ 유엔아동권리협약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제법으로서 조례의 근거 법규로 명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퇴학 여부를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7.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8. “영유아”라 함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9. “학생인권옹호관”이라 함은 제40조에 따라 임명된 자를 말한다.

- ☞ 초·중등교육법 2조에 규정된 학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등이 포함됨
- ☞ 교육청의 감독 하에 있는 유치원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함
- ☞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에서는 학생의 범위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상황에서 재학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입학(예컨대 이주아동) 및 퇴학 여부를 다루는 사람도 포함되도록 본 조에서 정의함
- ☞ 학원 및 탈학교에 대해서도 조례를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학원의 경우 그 근거법령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서 초·중등교육법의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고, 당사자의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교육의 경우 공교육에 있어서와 같은 책임 및 의무를 지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용 제외. 탈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공교육내에서의 인권 향상이 학교 밖의 청소년 인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함.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

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조례에 미처 담지 못했거나 분명히 제시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열거되지 않은 권리 내용도 경시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 방식도 학생이 참여한 상태에서 제정된 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제한 요건을 두고 있음.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시안은 '교육목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학칙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교육감의 학생인권 실현 노력 의무를 명시함
- ☞ 2항은 초중등교육법 18조4항의 내용을 옮겨오되, 보호자의 노력 의무도 포함시켜 가정의 책임도 함께 강조. '존중의 의무'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보호의 의무'는 학생의 인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실현의 의무'는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함.
- ☞ 학생에게는 권리와 함께 자기 인권을 알고 보호할 책임과 함께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도 함께 있음을 명시함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학생인권 보장이 교사에게 '금지 목록'을 부여함으로써만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 시스템'을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삽입
- ☞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공통의 기반 위에서 있음을 강조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차별 사유의 '예시 조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 관련 규정의 17개 사유에 더하여 학교 내 차별 양태를 고려한 징계, 성적, 경제적 지위 등을 추가함. 또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성적 지향과 아울러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함께 명시
- ☞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 열독실 운영 등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 기능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 ☞ 체벌 역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의 한 형태로 보고 금지함
- ☞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은 가해 주체가 교직원인지 학생인지에 구분 없이 금지되어야 할 폭력으로 간주되어야 함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적 의무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임.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학교의 장과 교직원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궁극적 책임은 학교의 장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임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계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 취학연령의 이주아동(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은 교육기본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교육과정의 자의적 운용, 교내외 행사 참석 강요 등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강제동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 교육과정의 편법 운용이나 행사 참석 강요는 교사의 수업권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생권과 교사 권리의 상호의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조항이라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기타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해 심의 권한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교육과정 및 교내외 행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함.

- ☞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산업체 파견된 현장실습생이

교육적 성격의 현장실습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현장실습생의 건강, 안전, 노동, 교육권을 동시 보장하기 위해 이 조항을 삽입.

- ☞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예를 비교적 상세히 열거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지원 책임을 명시.
- ☞ 교육관련 국내법 상 권리 향유자가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어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이주아동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별도로 명시.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항에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2항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야자, 보충 강제를 금지하고 있음. 강제 교육은 동의에 반한 교육이라는 점에서도, 학생이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 학습부담을 강제한다는 점에서도 인권침해라고 바라본 것임

☞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선택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비정규 교육활동의 다양성 보장 의무를 명시

☞ 현재도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선택권 보장'이 교육당국의 방침임.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동의가 아니라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있음. 조례를 통해 선택권의 주체가 학부모가 아닌 학생이라는 점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음

☞ 보충·야자 등에 대한 선택권 보장에 대해 흔히 사교육을 부추긴다, 학습분위기를 훼손한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의 의사는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그러나 이미 사교육 참가는 보충·야자를 빠질 수 있는 명분이 되어 있음. 공교육에서 제공되는 정규교과 외 교육이 학생에게 매력적이고 진정한 동의에 기초한다면, 학교에 남기를 원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학습분위기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봄. 또한 참여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추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런 비판은 조항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임.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입시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학생들 다수도 과중한 학습 부담을 스스로 떠안게 됨. 이런 현실에서 선택권 보장만으로는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전인적 발달의 여건을 만들어내기 힘들. 따라서 학습권에 이어 휴식권도 동시 보장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학습 부담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학생 인권이 상대적으로 잘 존중되는 나라에서는 학생의 학습 부담 시간을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을 늘이나 문화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생의 휴식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어야 하는 한편,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관련 조항을 삽입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 두발, 복장 등에 있어서 각자의 개성에 따른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 두발 자유란 학생들이 머리를 기르고 염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짧게 자르든 길게 기르든, 염색을 하든 하지 않든 학생 자신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파머, 염색을 금지하면서도, 곱슬머리를 스트레이트로 펴는 파머나 갈색머리를 검정색으로 바꾸는 염색은 허용하기도 한다. 이는 권리 실현에 차등을 두는 행위일 수 있고, 특정 머리 모양이나 색깔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만들기도 함.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두발 길이 자유는 명시하되, 염색이나 파머 등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을 통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음.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고, 학생의 참여와 의사가 존중되는 절차를 통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기는 함.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시안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두발, 복장 등 용모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두발, 복장 자유와 관련해서는 탈선 우려, 학습 분위기 훼손,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탈선, 학습 분위기 훼손은 복장, 두발과 무관한 이유에서 비롯됨. 또한 두발, 복장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은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오히려 학습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기도 함.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우려에 대해서는, 교복을 착용하거나 두발 제한이 있다고 해서 빈부격차가 가려지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격차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제13조(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성적지향·성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
3.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
4. 학생의 휴대전화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 단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학교 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6. 보호자의 학력, 재산, 종교, 가족관계를 비롯한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7.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8. 학생의 교우관계에 간섭하는 행위

- ③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⑦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성적 공개, 수업료/급식비 미납 공개, 성적 지향 등 개인정보가 함부로 누설되는 행위를 금지함
- ☞ 전체 학생을 범칙인 취급하는 일괄 소지품 검사와 압수, 사적 기록물 열람, 박음질된 이름표 착용 강요 등을 금지함.
- ☞ 일기검사의 경우 사생활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음. 일기를 통한 글쓰기 교육은 생활글 쓰기로, 학생에 대한 이해는 상담 등을 통해서도 가능.
- ☞ 학교마다 금지하는 개인 소지 물품의 목록이 조금씩 차이를 갖고 있음(예: 악세서리 전면 금지 학교도 있고 종교적 의미를 지닌 악세서리만 허용하는 학교도 있고 규제를 아예 하지 않는 학교도 있음). 이 조항에서는 학생의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의 목록을 제시하기보다는 개인 물품 소지에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만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함. 따라서 학교마다 어떤 물품을 소지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
- ☞ 휴대전화 이외에 MP4,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에 대한 소지도 가능토록 함. 다만 수업시간(시험시간) 중 사용에 대해서는 합리적 제한이 가능한 길을 열어둠.
- ☞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에 대한 의견 대립이 심각한 상태. 실제 휴대전화에 대한 규정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임. 학급단위 자체 규칙에 맡길 뿐 학교단위의 규정이 없는 학교도 있는 반면, 수업시간만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사용·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학교, 쉬는시간에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을 허가하는 학교, 아예 소지 자체를 불허하는 학교도 있음. 최근에는 몇몇 지자체에서 휴대전화 학교반입 금지 조례 제정을 시도하거나 휴대전화 금지 교장단 결의 등이 있기도 했음(휴대전화 금지 조례 제정이 유보된 것은 휴대전화의 호신 기능, 학습 도움 기능 등에 대한 호소가 일정한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 휴대전화 소지·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학습 분위기 훼손, 교사 수업권 침해, 휴대전화 중독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휴대전화는 학생들에게 이미 중요한 통신수단이자 호신 수단(위급한 상황에서의 연락, 폭력 상황 촬영 등)이 되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휴대전화의 소지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놓은 바 있음.
- ☞ 학생의 교우관계에 대한 제재 역시 사생활의 자유 침해로 봄. 학생의 교우관계에 대한 제재는 발생하지 않는 미래의 결과를 예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봄.
- ☞ CCTV의 경우에도 설치의 정당성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설치 여부나 장소 등을 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다만, CCTV 설치 가능 장소, 운영 시간, 녹화 테이프에 대한 접근권자 등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제14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은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의 장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 학생에게 개인 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징계 등 관련 정보의 공개 청구권 등을 보장.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학생의 정보인권 실현을 보조하고자 할 때 학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통해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실질화하도록 함
- ☞ 학교장에게 청구된 정보의 공개 의무를 부여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을 편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 ④ 학교는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 ☞ 학생의 사상/도서 검열(학생회장 공약, 외부 활동, 소지 도서나 신문 등), 강요된 진술서와 반성문 작성, 서약서 제출(신입생 선서, 순결서약,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등), 종교 강요 등의 관행을 금지
- ☞ 종교 강요 금지의 내용은 애초 교육부 지침으로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로 폐지되고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지침을 제정토록 하였음. 종교 강요 금지를 조례에 포함시켜 관련 규정의 위상을 상향 조정하는 의미가 있음
- ☞ 학생도 당연히 사상·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사상의 자유라는 용어가 학생에게 갖는 의미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제시하였음.

- * 헌법재판소 등에서는 양심을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 교육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반성문 작성이 원천 금지되는 것은 아님. 반성문이라는 문서의 형식이 아니라 '거짓 진술이나 양심에 반하는 반성 강요'가 금지의 핵심임. 잘못에 대한 성찰과 교육적 소통은 중요하지만, 양심에 반하는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반인권적이지자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본 것임.
- ☞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금지 항목을 세부화함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학생의 의사 표현, 언론 활동, 홈페이지 의견 제시, 설문조사, 서명운동, 피켓팅, 전단지 배포, 교내외 집회, 모임 결성 등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
- ☞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학생을 운동권 만든다, 교육현장을 혼란에 몰아넣는다, 교육을 정치화한다 등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집회의 목적, 양태,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도(학생회도 집회에 포함됨), 학교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부풀려진 것임. 또 실제 학생들 중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적극 행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 학교 안 의견 수렴 절차가 민주적, 역동적으로 가동된다면, 굳이 집회까지 준비할 학생은 거의 없을 것임.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
 2.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 ☞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
- ☞ 학생자치기구의 권한을 구체화함으로써 현재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가해지는 갖가지 제한 요인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
- ☞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은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충함.

-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학생들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의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 학칙은 학교 내에서 헌법과 다름없는 지위를 갖는 만큼, 학생의 참여권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은 참여할 수 없음.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지침이기도 하나, 지켜지는 학교가 많지 않음. 따라서 조례를 통해 학생의 학교규정 제·개정 참여권을 명시하고, 나아가 학교규정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49조 참고) 설치를 조례를 통해 보장함
- ☞ 특히 학생에게 학교규정의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아울러 명시함. 이는 민주적 학교운영의 필수적 요소라고 본 것임.
- ☞ 학교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 수렴뿐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소수 학생이나 학생대표의 의견만을 듣거나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일에 대비.

-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 학생자치기구, 학생대표는 물론 학생이 개인적으로, 또는 모임을 통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 미성숙한 학생에게 정책 결정 참여권과 같은 중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20세기 중후반부터 국제사회는 학생에 대한 보살핌과 아울러 자기결정과 참여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추세.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권리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교 운영과 정책 결정 참여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함. 참여의 기회야말로 가장 유효한 성숙의 기회가 된다는 점, 학생의 참여가 억압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학생들이 성숙한 판단 능력과 책임 능력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점, 교

육의 목적이 자율성의 신장과 민주시민의 육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성숙론은 참여권을 부정할 명분이 되지 못함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상담 등 지원을 받을 권리,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을 위한 우선적 예산 배정, 관련 제도의 정비, 지역사회와의 협조체계 구축, 보호자 대상 교육 등을 명시

☞ 보호자에 대한 교육,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현장 교사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음. 현재 학생 지원 과정에서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학교나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원천 봉쇄되고 있는 만큼, 보호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시설 개선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들을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라는 개념 아래 포괄하여 보장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개인적 문화 활동은 물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요건을 감안하여 별도의 권리조항으로 구성하여 제시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로 안전하게 만든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 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안전한 급식뿐 아니라, 급식 관련 정보 접근권과 의견 표명권을 명시.
- ☞ 직영급식, 의무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위한 노력 의무 조항도 삽입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로 인한 고통을 겪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생리공결제를 조례 수준에서 권리화하는 한편, 보건실과 보건교사가 더욱 절실한 지역인데도 보건실 조차 없는 소외지역 학교를 고려하여 보건실 확충 노력 의무를 명시
- ☞ 보건교사의 역할, 학생이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원하지 않는 건강 관련 조치(금연침 시술 등) 등과 관련해서 보완 필요
- ☞ 건강 향상을 위해 학교가 말아야 할 조치, 특히 임신한 학생, 질환을 가진 학생 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학생 징계 과정에서 적법성 보장을 명시적으로 요구. 나아가 학생 징계가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
- ☞ 학생에게 '대리인 선임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변론권을 더욱 강화하여 보장. 현행 초·중·고·대·교육법 상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변론권만 보장되어 있을 뿐임
- ☞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인 만큼 조례를 통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상벌점제의 벌점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 학생 스스로 학생의 권리를 알 권리, 곧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
- ☞ 학생이 자기나 타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 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청구 또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또는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학생인권옹호관 등 관계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 학생(이하 “소수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해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사실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⑦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⑧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 제6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적극적 조치에는 소수자 학생이 처한 특성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함
- ☞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학생 등을 고려하여 전문 상담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아울러 명시. 개별 학교마다 전문 상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이 그 역할을 대신 맡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이주아동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체류자격과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의 인정이므로 이를 조례에 적극적으로 반영함.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 제29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서울특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 ☞ 학생인권의 날 지정 등을 통해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독려함

-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서울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보장된 학생인권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임

-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 학교 내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함. 인권교육은 장기적으로 학생인권에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조례에서 보장한 권리 내용이 실현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 학생에게는 학기당 2시간 이상의 교육, 교직원에게는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 특히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려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킴
- ☞ 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외에도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모임을 권장

제32조(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를 위하여 교육·연수자료 및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교육청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 대상 각종 연수에 학생인권 내용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

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간담회 정도로는 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인권교육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것임

☞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여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서울특별시내 학생인권 실태 및 이 조례의 이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매년 학생인권 실태와 조례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함으로써 학생인권 신장 계획이 보완, 입안될 수 있도록 함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 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서울특별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실천 계획이 민주적, 안정적으로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제36조(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 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서울특별시민 중에서 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4.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⑦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교육청의 학생인권 정책 심의기구로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의 정책 결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참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함.

☞ 추천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추첨 선발 방식을 택함으로써 의지를 가진 학생의 참여 통로를 열어둠

☞ 정원의 1/5은 소수자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소수자 학생이 인권정책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

제38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감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 ☞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상황을 세부 점검하기 위하여 교육청 차원의 조사와 추가 조치 의무를 부여
- ☞ 교육청이 제시한 학생인권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적극적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아울러 삽입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교육청과 시민활동의 협력 체계 구축을 명시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인권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다만, 처음 선출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 행정감시기구인 옴부즈퍼슨(Ombuzperson)제도를 원용, 학생인권 구제기구로서 상임 5인 이내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
- ☞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에 의해 임명되되,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5인 이내의 학생인권옹호관은 각각 관할지역에서 활동하되, 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 권고 등 주요 사안은 옹호관회의를 통해 합의하도록 함.

제41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 학생인권옹호관의 겸직 금지를 통해 직무의 독립성을 두텁게 보장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조사권, 시정 권고권, 제도 개선 권고권 등을 부여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별도의 조례 제정과 재정 확보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이 가능토록 함

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과 전문조사원 등을 별도로 두도록 정함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인권상담실을 통해 학생인권옹호관과 지역교육청의 협조체계를 구축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감, 지역교육청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유사. 강제조치는 취할 수 없음. 또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치는 두지 않는 대신, 시정권고를 이행·보고하고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5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활동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권, 질의권, 방문조사권 등을 아울러 규정함

제5장 보칙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각 학교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도록 하고, 학생대표와 인권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규정 개정이 조례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

☞ 부칙에 따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조례 발효 이후 6개월 이내 구성되어야 함

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준용규정) 제2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 및 보호자 간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8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초안에 대한 의견

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 주민발의안의 의미

주민발의안 형태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헌법 규범을 민주주의적으로 구현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초안 발표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합니다. 더욱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또한 향후 학생인권의 보장에서 그리고 다른 시·도의 조례 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주민발의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제2조 해설에 언급한 ‘학원 및 탈학교’ (아동)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학원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발의안에는 학원에서 수강생에 대해 행해질 수 있는 인권 침해(예를 들면, 체벌)에 관해서는 학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금지 및 인권보장(학원의 교육환경) 의무를 규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탈학교 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8호에 따라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탈학교 아동을 위하여 최소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정도의 규정은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은 초안 마련 당시 교육감의 임기와 관련하여 시간적 제약이 있었던 탓도 있습니다. 주민발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나.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성격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임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는 학생의 인권을 단순히 확인·선언하기보다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우는데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은 헌법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됩니다. 또한 그 구체적 내용은 1991년 12월 23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조약 제1072호로서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부터 확인되고 있기도 합니다.¹⁾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²⁾ 헌법 제6조 1항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비준·공포하면 자동적으로 국내적 효력을 획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회의 동의는 법률 형식일 필요가 없이 단순한 의결로 충분합니다(헌법 제60조 1항).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성격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의 침해를 막고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행정을 수행케 하기 위한 교육행정직무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한 자치법규범입니다. 국가의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법률의 수권이나 위임이 없어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습니다.³⁾ 특히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⁴⁾ 그런 점에서 주민발의안이 학생의 인권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적절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4조 3항 학생의 노력 의무 또한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학원운영자에 대한 책무를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에 의하여 학교행정 및 학원운영이 인권규범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학원 운영에서 차별 금지는 학원운영자에게 어떠한 권리 침해도 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및 조약이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 등보다 낮은 기준을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경우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인권조례의 관계를 아래의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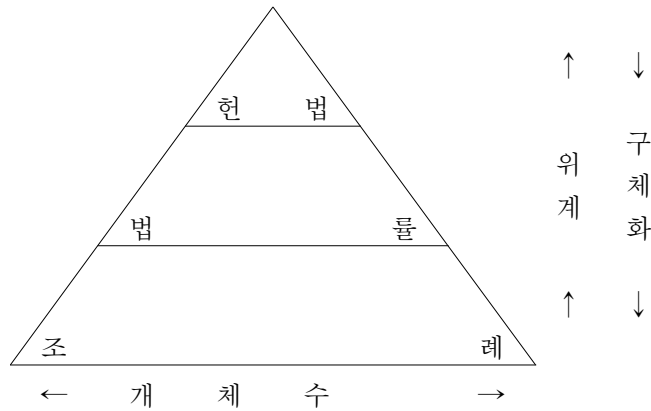
1)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1990년 9월 25일 서명, 1991년 12월 20일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2) 헌재 2001.09.27. 선고 2000헌바20 결정, 판례집 제13권 2집,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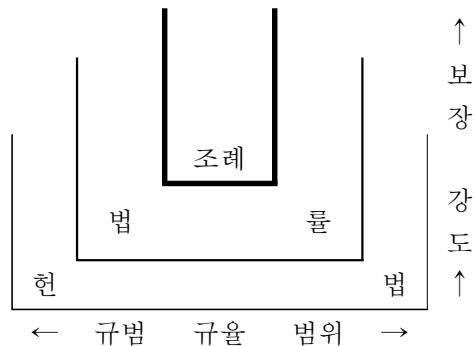
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이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4)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 위임은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다. 헌재 2004.9.23. 선고 2002헌바76 결정; 대판 2006.9.8. 선고 2004두947 판결;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317.

<그림 1> 법규범 형식에 따른 위계도



<그림 2> 법규범 형식에 따른 인권보장의 강도



법률은 ‘전국적 최저기준(national minimum)’으로서 작용하여 그보다 낮은 보장 수준을 최저기준으로 끌어올리는 구실을 합니다. 법률 기준보다 높은 기준의 인권조례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헌법 제37조 2항)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과제는 남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학칙에 의하여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더욱이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의 인권 보장수준을 낮추는 것은 그러한 한도에서 위헌입니다. 헌법규범에서 북극성처럼 빛나는 원칙은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⁵⁾이기 때문입니다.

다. 개별 조문에 대한 의견

5) 헌재 1991.7.22. 선고 89헌가106 결정.

- 제2조 9호 “학생인권옹호관”을 정의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 제7조 체벌 금지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처럼 다른 폭력과 구별되어 따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방지하여야 한다.고 노력의무보다 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방지는 기본적으로 예방의 의미로 이해됩니다. “금지”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9조 5항을 “취학연령의 이주아동”으로 표현하고, 이주아동에 대하여 팔호 안의 뜻으로 정의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표현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중복입니다.
- 제12조 2항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 제13조 2항 2호는 불필요합니다. 1호에 의해 2호는 당연히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예시의 의미를 살리려면 1호와 통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제13조 3항의 후단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역시 삭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로 뺏으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제13조 3항을 삭제하고, 1호 단서를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 제13조 2항 4호의 “제19조”는 “제18조”의 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제15조 1항에서 “사상의 자유”라는 보편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제15조 3항 4호 “편애하거나”보다는 “이익 또는”이라는 표현이 어떨까요?
- 제15조 3항 5호와 관련하여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의 자유도 있습니다. 재단의 다른 종교 비방 및 선전에 대하여는 학생의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즉 “학생의 종교선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표현함으로써 학교재단의 종교와 다른, 학생 개인의 종교를 선전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제15조 5호는 3항 2호에 포함시켜 “학생에게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로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 제16조에서 학교 밖의 문제를 규정한 것은 어떨지 고민입니다. 집회의 경우 집시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을 것인데, 이때 조례로써 이를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 제36조 4항 4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책에 대한 심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오히려 배석하는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공청회 토론문

최 훈 민(삼각산중학교 학생회장)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두발자유, 야간자율 학습, 보충학습 선택권, 의사표현의 자유가 주어지면 커다란 사회혼란이 일어나고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지극히 당연한 권리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며 오히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인권을 무시당한 채, 입시경쟁만을 강요당하며 생활하고 있는 모습엔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대학에 가서 마음껏 해라', '너가 놀고 있는 동안 옆에 있는 친구의 책장 페이지는 넘어간다'는 말로 경쟁과 입시공부를 부추기는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숨 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에겐 '학생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는 생각이 뿌리깊이 박혀있습니다. 규정보다 머리를 길렀다는 이유로 수십 대를 맞을 때마다 학생들의 마음은 고통으로 일그러집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어른들도 학창시절에 심한 체벌을 경험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시절에 사소한 실수와 잘못으로 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체벌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폭력적 체벌이 대물림되고 확대돼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학생인권조례'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되면 더 이상 학생들을 어른들 입맛에 따라 길들이고 손아귀에 쥐고 통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실천이 더 중요... 학생 자치활동 보장돼야

학생인권조례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마땅히 마련돼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주어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일은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된 이후의 일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됐다고 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거저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다고 해도 학교장이 권리를 제한하고 학생회가 학생이 주체가 돼서 자율적으로 꾸러지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허울뿐인 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학생회의 자치활동이 보장돼야 할 뿐만 아니라 육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야 진정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국회가 있다면 학교에는 학생회가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마다 학생회가 조직돼 있지만 학생회의 자치활동이 보장되지 않아 정말로 학생회다운 학생회 한번 갖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회의 영향력이 커지면 학생들을 통제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로 학생회의 활동을 이리저리 간섭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회가 학생들과의 소통은 뒷전이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어찌다가 있는 학생회의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권리는 스스로 찾아나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이상 학생회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회 자치활동을 학생들의 짐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 학교당국, 교육청, 국가교육행정기관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평하게 짐을 나눠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떠맡았을 때에야 비로소 학생인권조례가 완성될 것입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인권교육이 학교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모든 과정에 학생회의 참여가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회는 조례의 실천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해서 학교 측에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학교 학생회에서는 학생인권 실천과 모니터링을 위해 규제와 통제의

상징이었던 선도부를 폐지하고 학생인권부를 신설 하여 학생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의 참여 보장돼야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할 수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조도 개선돼야 합니다.

학교의 3대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이며 그중에서도 직접적인 교육당사자인 학생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합니다.

하지만 교칙을 바꾸거나 새로 정할 때에 정작 그것을 직접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학생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못합니다. 아니, 아예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결정되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학생대표 및 학생회가 참석해 학생들의 일을 스스로 발언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지위를 낮게 바라보시거나 찍어 누르려고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또한 인권존중의 학교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우리 학생들을 동등한 동반자로 바라봐줬으면 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안에 대한 토론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1. 시작하는 글

교사의 자격으로 토론을 하면서 교사의 시각에서 보이는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논의에 충실한 것이 토론에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의 토론 내용이 학생 중심에서 벗어난 이야기로 일관되더라도 양해를 구한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의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학교의 모습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수많은 논의를 통해 학교의 주요한 역할이 교육이 아니라 관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권을 경험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는 장에서는 아무런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가 관리라는 가치를 우선시 할 때 관리의 대상인 학생의 인권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학생의 인권을 증진하자고 하는데 교사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권리를 빼앗아 학생들에게 주는 것 같은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교육현장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웅변하듯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는 학교의 본질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학생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고민도 시작하게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지금까지의 학교와 가정이 교육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체벌의 경우 체벌이 존재해 왔던 이유는 교사와 학부모 교육적 역할 분담에서 있어서 유교적 방식에 따른 역할 분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의 의미는 가정(아버지)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학교(스승)에 위임한다는 말이다. 굳이 학교와 가정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기존의 전통이다. 서양에서 학교는 부모의 교육권한을 사회계약적 측면에서 위임받은 기관이다. 따라서, 부모가 위임한 만큼만 학교가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철저하게 사회계약적인 측면에서 학교와 가정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는 계약의 또라는 당사자로 학생이나 부모가 교육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학교가 부모를 소환하면 부모가 그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학생의 지속적인 문제행동이 수정되지 않을 때 일차적으로 가정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과정에서도 강

제전학이 가능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학교와 가정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전통적인 학교와 가정의 역할 모델은 분명 해체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역할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학부모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하고 학부모는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단순한 조례제정으로만 이해할 가능성이 많다. 학교는 여전히 무한한 교육적 책임을 지고 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매우 느린 속도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의 권위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에 대해 가정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지금과 같은 처벌제도로는 해결책이 없다. 최악의 상황이고 극소수의 상황이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벌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그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2. 생각해 보아야 할 점

1) 체벌금지에 관한 다양한 시각차이

①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체벌 그 자체를 악으로 보는 경우이다. 그래서, 어떠한 체벌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체벌의 교육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체벌, 악은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그만

체벌이 전통적으로 교육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교육적 효과를 인정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체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음에도 지켜지지 못했다. 학교는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서 체벌을 남발하고, 체벌이 쉽게 폭력으로 발전하는 상황에 대해 더 이상 대처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조례를 통해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③ 체벌은 여전히 필요하다.

체벌은 전통적으로 훌륭한 교육의 수단이다. 가이드라인만 잘 지켜지면 체벌은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필요하다. 체벌이 폭력으로 발전한 경우는 일부 교사들의 개인적 인격의 문제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할 문제이지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조례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학교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차별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세 가지로 압축한 것이다. 제가 보기에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여론의 바탕은 ①,②의 시각이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가끔 인권단체의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국민의 대다수가 ①번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통과를 가져왔다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제가 속한 단체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저희 단체 회원들과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여러 차례의 토론을 하고 얻은 합의점은 ①이 아니라 ②번 이었다. 물론 ①의 시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③의 시각을 가지신 분도 계신다.

저희 단체가 국민의 정서를 전부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교사들의 정서는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례라는 것이 결국 다양한 국민의 정서를 합의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정서를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학생인권 중 선택권은 부모의 동의아래 있는 제한적 권리 명시 부족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주로 중·고등학교의 시각에서 주로 기술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방과후 활동의 선택권 중 문제가 되는 것이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는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나 청소년 단체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 이 모든 활동에 대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도 전적이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방과후 활동에 대해 부모님과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가정과 선생님과 충분히 논의한 후 최종 결정을 학생이 해야 하는 부분에는 연령에 따라 다양한 단계가 필요하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에서 학생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미성년자의 선택권은 보호자(친권자·후견인)에 의해 제한된 권리이다. 조례에서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부터이다. 선언적 의미라면 몰라도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중에서 몇 세부부터 어떤 선택권을 줄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해

<의사표현에 관한 조항 비교>

서울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p>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위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서울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안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해 비교해 놓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안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드는 초기 안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보장방법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학생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 논의는 되었으나 최종안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6조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6조 2항과 3항은 경기도 인권조례와 같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의사표현을 위해 서명이나 설문조사 교내 집회의 경우

학생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학생회가 학생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될 경우 대의 정치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이 17조의 4항으로 옮겨서 학생회의 권리로 일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6조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들과 혹은 당위들 앞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학생의 정치활동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의견을 밝힌다면 정치활동이라는 용어를 빼는 수준에서 명기되었으면 한다.

교사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가 학생들에 대해 정치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학생이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교사의 정치적 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생길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초등학교부터 모든 연령대의 학생이 정치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매우 미성숙 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19세 이후부터는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지자체의 시·군·구 의원을 뽑는 선거에 대해서는 17세나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통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점진적인 행사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면 연령대별 정치활동에 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6조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추가하고 싶은 내용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
2.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 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17조 5항의 7호를 만들어 학생회가 가지는 권리에 있어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7. 학생회를 담당하는 교사를 지목할 수 있는 권리

학생회의 활성화와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운영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학생회 지도교사는 학생회에서 원하는 교사를 위촉하게 하며, 그 지도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한다. 학생회가 담당교사를 지목할 경우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은 교사가 선임될 것이다. 지금처럼 학교의 여러 업무중 하나로 학교장이 임명하는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선임된 교사는 출발점에서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

4. 적극적 학생권리 신장방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조례 제정후 다음단계로 학생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아동권리를 위한 다양한 지표와 지수의 개발을 제안하고 싶다. 학교에서 아동권리를 한눈에 알아보기 ‘학교행복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조례제정 활동 이후 적극적인 의미에서 학생권리 신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행복지수가 가지는 첫번째 장점은 학교현장을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적인 수치가 많은 한계점을 가졌지만 학교의 현실을 손쉽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백분율로 표현되는 학생의 점수가 모든 국민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백분율로 표현되는 점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장점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뿐만 아니라 간결하

게 수치로 보여 주어야 할 점들이 매우 많다. 실제로 내가 입학했을 때 보다 나의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있는지,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아침은 먹고 있는지,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구조에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등등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수치는 정말로 많이 존재한다. 수치를 통해 학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학교에 대한 논의들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학교행복지수가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로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입학생의 성적으로 대학이 한줄로 세워지면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이 구분된다. 실제로 대학에서 입학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육하여 학생들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 수 없다. 행복지수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학교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누적된 자료를 통해 관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수의 설정은 곧 학교의 정책목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학교는 공개된 성적비교를 통해 성적을 끌어오리기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학교행복지수가 발표된다면 학교는 각각의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좋은 지수들이 개발된다면 학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쉽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금처럼 성적만이 유일한 비교기준이 되면서 많은 교육적 요소들이 약화되고 특히,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균형잡힌 지표와 지수는 학교의 균형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아래의 표는 월간 좋은교사 잡지 7월호를 통해 발표한 행복지수를 구성할 지표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한 내용이다.

학교행복지수 구성 요소와 주요 지표

요소	지표	측정
안전	학교 폭력 신체적 학대 안전사고	일 년 동안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의 비율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 일 년 동안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강	아침 식사 흡연 과체중 운동	아침 식사 결식 비율 청소년 흡연율 체질량 지수(BMI) 25이상 비율 일주일 학교생활 중 운동 가능 시간 비율
학업	학업 성적	학업 성취 수준
	학업 열망	과목별 학업 흥미도
	인지 발달 기회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업포기	학업 중도 포기율 (장기 결석생 포함)
	학습 부진아	학습 부진아 비율 (학업성취 미도달 학생 수)
물질적 차별	학생 자비 부담율	전체 학교 교육 예산 중 학부모 부담 경비 비율 (급식비, 교복비, 활동비, 학습 준비물 구입비 등)
만족	학부모 만족도 학생 만족도 교사 만족도	매해 학부모 만족도 조사 매해 학생 만족도 조사 매해 교사 만족도 조사

학교가 학업성취수준만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는 아동의 권리는 끊임없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면 아동의 인권을 주요지표로 삼고 있는 학교행복지수의 개발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동인권향상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위의 지표는 기존의 연구 중에서 좋은 교사운동 정책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추출한 것이다. 학교행복지수는 보다 많은 연구와 풍성한 논의를 통해 개선되고 재정확보를 통해 시범적으로 학교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을 환영하며

김혜정(삼성중학교 학부모회장)

서울학생인권조례발의안에 적극적으로 공감 환영합니다. 그리고 중1, 고1 보호자로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학생인권보호라는 당연한 권리를 상처내고 제한하려는 일부의 움직임을 경계합니다.

1. 학생인권조례 시행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진지한 고민없이 우리 아이들을 몰개성, 도구화하면서 가장 손쉬운 통제 수단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해 온 점을 깊이 반성하고, 바야흐로 우리 아이들을 존엄한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입니다.

2.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교에서 혼란이 가중된다.”,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은 아직 회초리가 필요하다”, “공부가 우선이지 학생이 무슨 인권이냐” 등등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망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마치 내 아이 공부만 시켜주면 다된다는 식으로 학부모 의식을 폄훼하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하고 거부하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운동이 한 치의 후퇴 없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더불어, 학부모들이 진정 걱정하는 것은, 우리아이들도 우리와 동등한 인권이 있고 존엄 받아 마땅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즉각적인 후속 대책 없는 ‘선언문’으로 그칠 경우 학교와 아이들에게 남겨질 상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후속 대책들이 즉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3. 선생님들, 부디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장 지근에서 이해하고 지도하신 소중한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노력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일부 선생님들의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침해요 교권추락”이라는 주장을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공부하라는 말 외에 최소한 인간적인 관계형성마저 쉽지 않을 정도로 바쁜 선생님들의 아픈 현실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대안 없는 체벌 금지는 아이들에 대한 마지막 관심과 열정마저 포기하라는 것이라는 선생님들의 절박한 마음 역시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수업권과 교권침해를 우려하며 학생인권보호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조례 시행

자체를 반대하시는 모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마저 하지 않는 무기력한 자기합리화로 비춰지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은 누구를 위해 누구는 희생하는 선택적인 일이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 서로의 인내와 격려가 필요한 행복한 여행임을 깊이 인식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조례시행과 함께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개선 실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 교육감과 우리는 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조례 시행 이후가 아닌 지금부터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진정한 학생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의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 및 통로를 통한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울시민의 인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정착되기까지는 한동안 그 갈등과 상처가 고스란히 구성원의 몫으로 남겨질 것이며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의 긴 인내와 뜨거운 격려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격려는 인권에 대한 구성원간의 공감과 상호존중 없이는 있을 수 없으며 학생인권이 성적과 학생다움, 교권 등 그 무엇과 비교해 선택적이지 않고 나아가 교사와 학부모인권, 그리고 여타 생명의 존엄성까지 더불어 소중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공유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 교육감과 우리는 교사 수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축소, 그리고 교사의 행정업무 축소 등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구성원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항구적으로 온전하게 학생인권보호가 달성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다수 학생들과 현장에서 부딪치는 교사들의 노력만으로는 기대하기는 우리 학교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과도한 수업 시수뿐 아니라, 쏟아지는 행정 업무, 연수, 방과 후 수업, 사후약방문식 생활지도, 기간제 교사 확대 등, 학생과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시간과 학생을 기다려 줄 여유마저 허락되지 않아 말보다 손이, 경청 보다는 일방적인 지시가 나도 모르게 먼저 튀어나오게 된다는 선생님들께 회초리가 아닌 고운 말씀으로 인내하며 가르쳐달라는 당연한 부탁도 가끔 죄송해서 지레 포기하는 마당에 더욱이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개성까지 강한 럭비공 같은 우리아이를 체벌하고 비난했다는 결과만 가지고 인권옹호관에 신고부터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셋째, 서울시 교육감은 초 중 등 교육을 파행으로 내모는 주원인인 대학 입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 대상과 권한에 제한 없이 함께 노력하고 개

선해야 합니다. 또한

과정의 중요성보다는 결과와 숫자에 치우친 학교현장의 평가를 지양하여 주십시오. 초중등 학부모 대부분은 자녀들의 학습량이 살인적인 과도한 노동으로 최소한의 쉼 권리마저 박탈하며 학생인권을 위협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감히 거스르지 못하고 끝없이 사교육비를 지출하며 늦은 밤까지 학원과 학교로 우리 아이들을 내모는 이유는 한마디로 “그놈의 대학이 뭐지...”, 대학 등급이 취업과 이후 인생의 경제적 소득수준으로 대부분 귀결되는 현실에서, 학교도 그저 뛰고, 학부모도 그저 뛰고, 선생님도 덩달아 같이 뛰고... 모두가 끝을 알면서도 뛰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당장 내년이면 새로운 교육과정개정안과 수능개정안이 무뎌배처럼 학교를 점령하면 학생인권침해는 더욱 심화될 상황에서 우리는 덩달아 또 뛰어야 합니다.

넷째, 부모 경제력으로 인한 학생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에도 근거가 없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즉각 폐지하고, 초중등 무료급식 역시 조례제정 이전에라도 즉각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입시교육을 떠나 과도한 학습노동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할 권리(제11조)와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22조)’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쉼 공간 확보를 위한 강화된 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학교에는 수학 1,2,3 교실과 영어 1,2,3 교실과, 영어교육을 위한 대형 tv 및 전자칠판은 있어도 점심시간에 바글바글 대는 교실을 떠나서, 혹은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 대신 한두 시간 정도 영화 한편 볼 최소한의 공간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 스스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향유하기 위한 학교 안 독립적인 공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안이 필요합니다.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실행되었을 경우 당장 다가올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봅시다.

선생님들께서 체벌 금지 후 학생지도의 문제와 수업권 확보, 교권 침해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일선학교들은 상벌점제와 성찰의자 및 성찰교실운영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찰교실을 도입하든 안하든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또는 교사 학생간 상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담교사제를 즉각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한 격리 차원이 아닌 공동체 삶을 위한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들을 책임지고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지도해줄 전담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우리 학부모들은 체벌금지과 복장 자율화 이후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학부모는 야간자율학습 등 정규수업 외 강제 학습 금지 이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대입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권은 보장되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즉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현재 모양대로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하거나 또 다른 사교육비 지출을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립학교 학부모들의 고민은 공립학교 학부모들과 달리 체벌금지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폐쇄적인 사립학교에서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다는 자조가 있습니다. 너무나 부당한 학생인권 침해를 목격하고 당하면서도 제대로 항의마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인권조례제정 후 폐쇄성을 극복하고 인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 각별한 대책이 사립학교에서는 필요합니다.

저는 학부모로서, 공동체의 동반자로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온전하게 보호받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인내하고 격려하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학부모로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더 이상 아젠다 수준이 아닌 실천의 경지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이뤄내길 기원합니다. 특히 주민발의에 나선 주민들의 봉사자로서 파트너로서 서울시의원들께서는 보수 - 진보 구별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단위학교 교장 입장에서 본 학생인권조례

이 복 균(신도림중 교장)

I. 긍정적인 내용

- 헌법 제31조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은 바람직스러운 일

II.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내용

-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복장
 - 두발
 - 용모
-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소지품 일괄 검사
 - 일기장, 개인수첩
 - 휴대전화기
 - 이름표 착용
 - 개인 정보
 - 교우관계
-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된다
- 제16조 의사 표현의 자유
 - 집회
 - 시위
 - 단체활동, 정치활동
- 학교 안팎에서 집회나 시위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 밖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19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교육정책 결정 과정 참여

○ 운영위원회 참석 발언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III. 재정적 지원을 위한 예산 관련 내용

제5조 교육환경의 개선

○ 교육시설

○ 환경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 휴게 공간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제17조 자치활동의 권리

○ 시설

○ 재정적 지원

○ 예산,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 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제20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청결한 환경의 유지

○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 적절한 냉·난방 관리

○ 녹지 공간 확대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급별예산 편성 현황(본예산 기준 / 수익자 부담 경비 제외)

학교급별	예산액(단위/천만원)
초	51
중	69
고	74

□ 사업별 예산편성 비율 현황(중학교)

사 업	비율(단위/%)
인건비	33
교수학습활동비	33
학교일반운영비	21
시설비	7
학생복지비	4
업무추진비	3

IV. 맺음

□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50조에 걸친 학생인권조례가 “노력한다”는 상징적 의미로만 유지되어

□ 단위학교장들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로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 체벌 금지에 대하여 교사들도 대다수 공감하나 생활지도부장, 학생 생활지도 담당 업무 교사, 담임교사에 대한 부담감이 크므로 합의된 대안이 마련되어 부담감을 해소하여야 하며

□ OECD 선진국 수준의

○ 학급당 인원 수

○ 학교당 법정 교원 수 배정

○ 교사 1인당 표준수업시수도 병행 추진하여 공교육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학생들은

□ 학생 신분에 상응하는 기본적 예의와 규칙을 준수하며

□ 교사, 학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기대에 부응하려는 하는 의지를 기르며

□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학교생활의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서울에도 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되어야 한다.

김형태(서울시 교육의원)

지난 10월 5일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오로지 교육의 경쟁과 수월성만을 강조하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창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2000년 ‘학생 안전 및 폭력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2007년에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종합조례 형태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지자체는 2000년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市)를 필두로 총 13곳에 이르며, 아동 참여나 학대방지 등 특별한 목적을 두고 아동권리 조례를 제정한 곳도 16곳이다.

최근에 방글라데시까지 법률로 차별이 금지되고 학생인권이 보장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야 인권이라는 말을 학교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인권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천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정당화되고 두발규제 등도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분명히 아래와 같은 헌법과 법률이 있음에도 인권의 주체인 “사람”이라기보다는, 학생은 “훈육과 관리의 대상”으로만 취급되어 왔던 것이다.

* 헌법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 교육기본법 :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크게 ▲학교 내 차별 금지(제6조)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제9조)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규제 금지(제11조) ▲학생 등의 아래 소지품 검사(제12조 ②항)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제12조 ④항)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제15조) ▲인권교육 의무화(제30조) 및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제39조) 등 학생 인권 및 학교문화 전반의 개혁적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에 의하면 체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수시로 경험한다는 답이 35.2%, 1주 2회 이상 경험이 26.4%로 중고등학생들의 체벌 현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발복장규제의 경우,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인 99.4%에 존재하며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오후/저녁 보충수업, 방학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의 경우, 중/고등학생들 중 40% 안팎 또는 과반수 이상이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 7시30분~59분 사이가 41.7%로 가장 많았다. 서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말할 필요없이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누가 뭐래도 학생이 교육 제1주체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학생들은 교육의 장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이 아닌 사육을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땅히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해야 함에도,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요인들이 많았다. 이제는 학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짐을 덜어줄 때가 왔다고 본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제거해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이다. 시기상조라는 말도 많이 들린다. 학생인권조례안이 학생들의 일탈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을까? 두발 자유가 무분별한 파마와 염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야간 자율학습을 하도록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학교밖에서 방황하고 배회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무시와 도전으로 인해 교권이 흔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이 바로 서야 교사의 인권도 바로 서는 것이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될 때 비로소 교사의 권위도 살아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안이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장학진의 학교 방문으로 학교현장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비롯 ▲인권조례시행 준비단 구성 ▲인권 및 인권조례 관련 각종 연수 개최 ▲교육규칙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체벌 대체 방안 연구 용역 ▲조례해설서 제작 배포, ▲찾아가는 학생인권조례 설명회 등의 세부 추진사업 일정을 확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와 설득작업, 당위성 설명 등의 작업 없이 시작할 경우,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에 앞서, 오늘과 같은 공청회, 토론회 등이 필요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 홍보와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학부모님과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면서 한 걸음 한걸음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위원과 서울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7.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8. “영유아”라 함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9. “학생인권옹호관”이라 함은 제40조에 따라 임명된 자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계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 취학연령의 이주아동(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은 교육기본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성적지향·성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
3.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
4. 학생의 휴대전화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 단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학교 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6. 보호자의 학력, 재산, 종교, 가족관계를 비롯한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7.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8. 학생의 교우관계에 간섭하는 행위

③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은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의 장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정이나 삭제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학교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을 편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 ④ 학교는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의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

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
2.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권)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학생들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의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 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로 안전하게 만든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 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로 인한 고통을 겪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청구 또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또는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 학생(이하 “소수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 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해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⑦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⑧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9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서울특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를 위하여 교육·연수자료 및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서울특별시내 학생인권 실태 및 이 조례의 이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서울특별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 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서울특별시민 중에서 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4.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 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 ⑦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 ④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감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해

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인권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다만, 처음 선출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1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감, 지역교육청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5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준용규정) 제2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 및 보호자 간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8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예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

니 된다.

-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 제28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 제29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일반인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3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32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3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5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행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명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0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사무기구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 ③ 사무기구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과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정권고 등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5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4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제39조에 따른 상임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6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메모장